



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

◎ 노인학대란?

-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정서적, 성적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,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.

◎ 노인학대 행위란?

- **신체적 학대**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 - 노인을 폭행한다.
 -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 -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.
 -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.
- **언어, 정서적 학대**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 -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 - 노인의 사회관계유지를 방해한다.(친구, 친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)
- **성적학대** :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**재정적 학대(착취)** :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**방임학대**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 - 식사와 물을 주지 않음, 노인을 혼자 있게 하는 경우, 청결유지를 태만히함
- **자기방임** :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
◎ 노인보호전문기관 · 노인학대 신고 전화

-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'즉시' 신고하여야합니다.
- **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** : 국번없이 1389번 또는 123(보건복지 콜센터)

노인학대! 가정에서 no! 시설에서도 no!

◆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◆

1.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.
2.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.
3.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.
4. 노인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.
5.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십시오.
6.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7.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.
8.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.
9.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.
10.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노인학대 신고전화 **국번없이 1389번** 또는 **123(보건복지 콜센터)**